

## 소송 후견인 설명서 [일반버전]

---

안녕하십니까?

당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 법원 측에서는 이미 당신과 관련된 가사사건에 소송 후견인을 선임해 드렸습니다. 소송 후견인과 관련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여 드리니,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1. 소송 후견인은 무엇입니까?

당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사법제에는 ‘소송 후견인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당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당신과 법원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, 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.

### 2. 어떤 사람이 소송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까? 인원은 몇 명입니까?

사회복지주관기관, 사회복지기구 소속 직원, 변호사협회, 사회복지사협회,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협회에서 추천한 적합한 사람만이 법원의 선임을 통하여 소송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송 후견인은 사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적당한 인원을 배치하되 그 수를 1명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.

### 3. 소송 후견인의 업무

#### ● 피보호자의 최고이익을 지키다 :

소송 후견인이 업무를 진행할 때 당신의 가족관계, 생활, 감정상태등 모든 상황을 주의하고 당신의 최고이익을 지켜야 합니다. 만약 당신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.

#### ● 법적절차행위 :

소송 후견인은 당신을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드리고, 독립항소와 항고 등 기타 성명불복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

법률에 따라 본인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소송 후견인이 당신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.

● 소송문서의 이용 :

소송 후견인은 법원 측에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, 문서내용을 초록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.

● 법적절차 설명 :

소송 후견인은 당신의 나이에 따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, 사건의 목적(즉, 법률관계), 과정과 가능한 결과를 설명해드립니다.

● 피보호자와의 면담 :

필요할 때 소송 후견인이 당신과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. 당신의 최고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, 당신의 가정생활에 긴장감과 불편을 주지 않고 당신의 중복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● 피보호자의 특정 가족과 면담, 조정이나 화해절차 참여 :

당사자와 관계자가 그들 사이의 분규를 평화롭게 처리할 의향과 바람이 있을 때, 법원은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소송 후견인이 당신의 특정 가족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. 또 사건 진행의 이해관계와 가능한 영향을 분석하고, 사건의 조정이나 화해절차 진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● 지면 혹은 언사로 보고 및 건의를 한다 :

재판장이 사건 절차를 더 순조롭게 진행하고, 소송 후견인이 그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 후견인은 당신의 이해능력, 의향, 법정에서의 의견 진술의 적당함과 의향, 절차진행 장소, 환경, 방식, 시간, 당신의 본건 목적에 유리한 방안 및 법원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기타사항 등을 보고하고 건의해야 합니다.

4. 소송 후견인과 피보호자의 의견이나 행위가 다를 때 혹은 소송 후견인의 절차행위가 당신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경우 :
- 절차무능력자인 경우 : (예를 들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이해득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7세미만의 어린이와 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), 법원은 소송 후견인의 행위를 가지고 법원이 재판하거나 인정하는 절차행위에 대한 효력의 근거로 삼습니다.
  - 행위능력자인 경우 : (예를 들면 소송 후견인이 소송화해를 원하지만 당신이 반대하는 경우),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.
5. 제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, 법원에서 저를 위해 소송후견인을 선임해 줄 수 있습니까?  
소송후견인은 당신이 위임한 대리인과 서로 다른 역할,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당사자가 변호사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, 법원에서 가사사건법 선임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성명하는 대로 혹은 직권에 따라 소송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
6. 소송후견인의 비용  
법원에서 재정지급으로 소송 후견인에게 보수를 줄 경우, 이 보수는 가사사건 심사 처리 절차비용 중의 일부분이고, 법원은 이 사건의 심사처리가 끝나는 대로 절차비용을 누가,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는 지 결정합니다. 필요할 경우,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자에게서 먼저 소송 후견인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